남악 오룡지구 호반베르디움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개요 및 예정일정

○ 위치 :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32BL

○ 규모 : 지하1층, 지상 16~20층 10개동 총 6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문의전화 1566-0878**

■ 일정계획(예정)

구분	예정일정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17. 11. 23(목)(예정)	http://www.namak-hoban.co.kr
모델하우스 개관	2017. 11. 24(금) (예정)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333-3번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2017. 11. 28(화) (예정)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2017. 11. 28(화) (예정)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함.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특별공급 신청	2017.11.28(화) 09:00~15:00(예정)	남악 오룡지구 호반베르디움 견본주택 [목포시 옥암동 1333-3]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7.11.28(화) 17:00(예정)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 사항

- 특별공급은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특별공급 당첨에 대한 개별 통지 및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수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는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 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다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 하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추첨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1.23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 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공통사항(계속)

청약자격 요건 (입주자저축)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1.16예정)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총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자 중 총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③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임.

■ 기관 추천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구성원 입증서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O		인감증명서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O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O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도장	대리인	

■ 남악 오룡지구 32BL 호반베르디움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대상세대	84A	84B
9	8	1

■ 남악신도시 오룡지구32BL 호반 베르디움 특별공급 추천 양식

○ 추천기관 :

○ 특별공급 대상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추천명단

타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				